2024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공고

한앤코19호 유한회사는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4.3.15. 자 2024비합30056결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기준일을 공고(2024.3.22. 매일경제신문)하였습니다.

아 래

남양유업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남양유업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한앤코19호 유한회사는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15.자 2024비합30056 결정)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권자로서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남양유업 주식회사 정관 제10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4조(공고방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다음

1. 기준일(권리주주 확정일) : 2024년 4월 8일
2. 명의개서정지기간 : 해당 사항 없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름)
3. 설정사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비합30056 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의 확정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및 공고는 임시주주총회 회일2주 전에 별도로 진행할 예정

남양유업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 소집권자

한앤코19호 유한회사

대표이사 김 경 구